

## 제16장 정부조달

### 제16.1조 목적

당사자들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법,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당사자들 간 협력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제16.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자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정의하거나 통보한대로, 그 당사자의 중앙 정부기관이 이행하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자신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가 투명성 및 협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협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16.3조 원칙

당사자들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정부조달의 역할을 인정한다. 정부조달이 분명하게 국제 경쟁에 개방된 경우, 각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정부조달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부조달을 수행한다.

### 제16.4조

##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가. 자신의 법과 규정을 공개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절차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입찰 기회가 공표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그리고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부속서 16-가(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에 명시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영어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 제16.5조

### 협력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 각자의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들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가능한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법, 규정 및 절차, 그리고 그 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당사자들에 대한 훈련, 기술 지원 또는 역량 강화 제공, 그리고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의 공유

다.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우수 관행에 관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라. 가능한 경우, 전자조달 체계에 관한 정보의 공유

#### **제16.6조**

##### **검토**

당사자들은 정부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에 이 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20.8조(일반 검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 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제16.7조**

##### **접촉선**

각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에 따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에 관한 세부 연락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에 관한 세부 연락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신속히 통보한다.

#### **제16.8조**

#####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